

의안 번호	896	【울산광역시중구 대학생 학자금 지원 아르바이트 운영에 관한 조례안】 검 토 보 고 서
----------	-----	--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안일자 · 제안자 : 2012. 03. 06(화) 김지근 의원의외 4명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2. 03. 09(금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2. 03. 14(수)

2. 제안이유

-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둔 대학생의 학자금 지원 등을 위해 매년 방학기간 동안 구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게 하거나 구정의 현장체험의 기회제공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아르바이트 운영 목적과 대상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아르바이트 운영시기 및 근무기관(안 제3조 및 제4조)
- 다. 아르바이트 신청 (안 제5조)
- 라. 아르바이트 대상자 및 선발 통지 (안 제6조 및 제7조)
- 마. 아르바이트 노임기준 및 지원(안 제8조)

4. 제정조례안 : 따로 붙임

5. 관련법령 : 해당없음

6. 검토의견

○ 조례제정 필요성

-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지근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학비마련에 어

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

○ 주요 내용

- 대학생 아르바이트 대상 규정, 운영시기 및 근무기관 등을 규정함 (안 제2조 내지 제4조)
- 대학생 아르바이트 신청 및 우선선발 대상자, 선발통지 방법 규정 (안 제5조 및 안 제7조)

○ 결 론

- 본 조례안은 학비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관내 거주 대학생들에게 방학기간을 맞이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행정체험 기회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한 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 함이 가할 것으로 생각됨